###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2519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9.

발 의 자 : 임희도 의원

#### 1. 개정이유

하남시 결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결산 검사가수행될 수 있도록 함.

#### 2. 주요내용

하남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금액 기준을 명문화함. (안 별표2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・구조문대비표: 해당없음

## 5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20. ~ 10. 25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6. 부서협의 결과(회계과)

조례안 제13조(지급기준) 및 별표 제2호

부서 검토의견: 조례안 제13조 본문에 "예산의 범위에서"를 추가하고,
별표 제2호의 일비를 "200,000원/1일 이내"로 규정하여 수당 지급에
대한 집행부의 재량이 필요함. ⇒ 집행부 의견 반영

하남시 조례 제 호

#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 본문 중 "별표 제2호"를 "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2호"로 한다. 별표 제2호의 일비의 액수란 중 "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규정한 금액"을 "200,000원/1일 이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 또는	제13조(지급기준)
여비는 <u>별표 제2호</u> 에 의하여 지급	<u>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2</u>
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	<u>ই</u>
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	
정에 준한다.	